

소장

원고 김부상 (850315-1*****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50, 1205 호 (상암동, 월드컵아파트)

전화: 010-2222-3333 / 이메일: injured@email.com

피고 이가해 (781120-2*****)

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00, 301 호

전화: 010-4444-5555

손해배상(자) 청구의 소

청구취지

-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,800,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6월 1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

1. 사고의 발생

피고는 2025년 6월 15일 11시 30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번길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 소유의 차량(20 가 1234)을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 운전한 과실로, 원고 운전의 차량(16 나 5678)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.

2. 피고의 책임

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, 피고는 민법 제 750 조, 제 751 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3. 원고의 손해

- 가. 치료비: 금 5,200,000 원
- 나. 향후 치료비: 금 1,500,000 원
- 다. 차량 수리비: 금 8,500,000 원
- 라. 휴업손해: 금 10,440,000 원 (57 일 + 향후 30 일)
- 마. 위자료: 금 4,000,000 원
- 바. 합계: 금 35,800,000 원

4. 결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및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증방법

- 갑 제 1 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
- 갑 제 2 호증 진단서
- 갑 제 3 호증 진료비 영수증
- 갑 제 4 호증 의사 소견서
- 갑 제 5 호증 차량 수리비 영수증
- 갑 제 6 호증 재직증명서
- 갑 제 7 호증 소득금액증명원

첨부서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 통
2. 소장 부분 1 통
3. 송달료 납부서 1 통

2025년 11월 6일

원고 김부상 (인)
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